시 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724
결재일자	2016.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어르신지원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이혜경	*육언조*	*02/16* *박기용*		
협 조				

2016년 노인돌봄서비스 운영계획

2016. 2

어르신복지과

함께서울

서울특별시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 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노인돌봄서비스 운영계획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 독거어르신 등에게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경위

○ '07. 3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실시
○ '07. 6월 독거어르신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실시
○ '08.12월 기존 2개 사업을 「노인돌봄서비스사업」으로 통합운영
○ '10. 2월 가사간병서비스 어르신 이용자를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이관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보호의 방법)

2 '15년도 추진실적

□ 돌봄기본서비스 사업 :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전화 및 방문)서비스

○ 지원인원 및 금액 : 22,699명, 7,182백만원 (국비 4,919백만원, 시비 2,263백만원, 구비 별도)
○ 대상자는 만65세이상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독거어르신중 자치구에서 선정

□ 돌봄종합서비스 사업 : 장기요양등급외 A,B어르신에게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 지원인원 및 금액 : 2,641명, 5,238백만원(국비 3,492백만원, 시비 1,746백만원, 구비 별도)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자로 전국가구평균소득 150%미만까지 지원

☐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 고독사·자살 예방을 위해 친구를 만드는 사업**

○ 지원인원 및 금액 : 900명, 750백만원(국비70:시비15:구비15)

○ 가족이나 이웃과의 왕래가 거의 없고 사회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을 특성별로 분류(은둔형, 자살고위험군, 관계위축집단)하여 사례관리, 병원진단, 집단활동프로그램, 나들이 등 서비스 제공

※ 14년 9개자치구에서 시범실시, '15년 9개구(18개기관)실시하였으나 자원발굴 등 애로있음.

3 '16년도 추진계획

사업유형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대상자	▪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한 독거어르신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요양서비스 필요) 어르신 -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 구청장 인정자(서비스대상자의 5% 이내) -건강기준 : 장애1~3급 또는 중증질환자 -소득기준 : 차상위계층 이하
이용자 부담	▪ 무료(공급자 지원방식)	▪ 본인부담 : 무료~64천원(바우처 방식)
사업수행기관	▪ 자치구별 서비스지정기관 (노인종합복지관 등)	▪ 자치구별 서비스기관 등록 (비영리법인·단체, 개인 등)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수혜인원 : 21,825명**

○ **수혜대상**(만65세 이상) :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독거어르신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 점수 평가 후 대상자 선정

※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조사한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토대로 자치구에서 선정

○ **운영인력 : 873명**(서비스관리자 33명, 독거노인생활관리사 840명)

- 서비스관리자 : 주 5일, 일 8시간 근무(09:00 ~ 18:00)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 주 5일, 일 4시간 30분 근무(13:30 ~ 18:00)

○ **수행기관 : 25개소(1자치구 1개소 원칙)〔별첨1〕**

- 노인복지관 19개소, 돌봄통합지원센터 5개소, 돌봄지원센터 1개소 등

※ 수행기관은 노인대상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인중 자치구에서 선정

○ **서비스내용 : 안전확인, 건강·영양관리 등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주 1회 방문, 주 2회 이상 전화통화로 정기적인 안전확인
- 건강관리 등 생활교육, 지역 내 민·관 보건복지서비스 발굴 및 연계 등

○ **사 업 비 :7,601백만원**(국비 5,067백만원, 시비 2,533백만원, 구비 별도)

- 분담비율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보조금 지원기준**

구 분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인 건 비	월 150만원 / 1명	월 78만원 / 1명
운 영 비	연 178만원 / 1명	연 112만원 / 1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수혜인원 : 2,801명**

○ **수혜대상**(만65세 이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B자(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 '16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1인 2,470천원, 2인 4,746천원)

- 구청장 인정자 장애1~3급, 중증질환자(차상위 이하)

○ **수행기관 및 종사자 : 224개소 2,458명**

- 재가장기요양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센터, 데이케어센터 등

○ **사업기간 : 2016.1.1 ~ 2016.12.31**

○ **서비스 이용시간 : 월 27시간 ~ 36시간**

○ 서비스내용 :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

-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단,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단기가사서비스 지원** : 최근2개월이내의 골절 또는 중증질환수술자를 대상으로 가사, 일상생활 및 신변·활동지원(취사, 청소, 세탁, 외출동행 등)
-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등

○ 사 업 비 : 6,352백만원(국비4,235백만원, 시비 2,117백만원, 구비 별도)

- 분담비율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보조금 지원기준

서비스시간	소득기준	총 구매력(월)	바우처 지원액	선납본인부담금
월 27시간	평균소득130%~150%미만	264,600원 (100%)	216,600원	48,000원(18.0%)
	평균소득100%~130%미만		222,600원	42,000원(16.0%)
	차상위초과~100%미만		220,500원	37,000원(14.0%)
	차상위		246,600원	18,000원(7.0%)
	기초수급자		264,600원	무 료(0%)
월 36시간	평균소득130%~150%미만	352,800원 (100%)	288,800원	64,000원(18.0%)
	평균소득100%~130%미만		296,800원	56,000원(16.0%)
	차상위초과~100%미만		303,800원	49,000원(14.0%)
	차상위		328,800원	24,000원(7.0%)
	기초수급자		344,520원	8,280원(2.4%)

□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 지원대상 : 가족·이웃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 높은 독거노인

○ 수행기관 :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선정된 기관

※ 서울시 12개 구청 13개 기관에서 신청(노인복지관 13)]

○ **지원내용 : 고독사 및 자살위험군 그룹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서, 공식적 서비스를 받지 않은 독거노인
  ⇒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 **활동제한형 고독사 위험군** : 사회적 관계는 유지되나, 만성질환 또는 일상생활능력(ADL)제한으로 인하여 외부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독거노인
  ⇒ 신체질환 및 우울증 치료 지원과 집단활동 프로그램 제공
- ▸ **우울증 자살 고위험군** : 자살기도 후 생존자,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독거노인
  ⇒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집단 정신치료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제공

○ **사 업 비 : 사업당 50백만원**(국비 50%, 시비 25%, 구비25%)

□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시비 자체사업)

○ **지원대상 : 76,518명**(독거어르신 및 재가서비스 지원 취약어르신)

○ **지원내용 : 돌봄서비스의 중복지원 방지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재가어르신 돌봄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지원**(운영비 및 인건비)

○ **어르신 돌봄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주요기능**

- 돌봄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중복서비스 예방 및 조정기능 수행
- 수혜대상 어르신 개인별 욕구사항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 서비스 수혜대상 어르신 생활실태, 긴급구호 등 실시간 현황 관리
  - ▸ 공공서비스(기초연금, 국민기초수급, 무료급식, 주거 지원 등) 및 민간서비스(후원금, 식생활지원 등) 실시간 관리
  - ▸ 수행기관별 돌봄서비스에 대한 통계관리, 실적 모니터링 관리
  - ▸ 민·관에서 지원되는 복지·보건서비스의 통합관리

○ **수행기관 : 25개소**(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기관 및 돌봄통합센터)

- 수행인력 : 자치구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정기관당 사례관리자 1명

○ 사 업 비 : 616,200천원(시비 100%)

구 분	지 원 액	산 출 근 거
인 건 비	466,200천원	1,554천원 × 25명 × 12개월
운 영 비	150,000천원	500천원 × 25개소 × 12개월

- 운영비 집행기준 : 지원인력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교육비, 통신비, 사무기기구입, 지역복지기관 간담회, 기타 필요한 부대비용 집행

※ 인건비 불용액은 운영비로 전환사용 가능하나, 반드시 자치구에 사전 승인

□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비 지원 (시비 자체사업)**

○ **지급대상 :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총 898명**

- 서비스관리자(33명), 독거노인생활관리사(840명), 사례관리자(25명)

○ **지급기준 : 월 3만원**

- 정해진 유급휴가 이외의 결근시 일급을 감하여 지급(일급 : 1,160원)
- 출산휴가 등 유급휴가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전액 미지급

○ **사 업 비 : 323,280천원**(시비 100%)

구 분	지 원 액	산출근거
종사자 활동비	323,280	30천원 × 898명 × 12개월

4 향후 추진일정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혜자 적극 발굴 : '16.2월 ~**

□ **노인돌봄서비스 보조금 지급(국비 매칭사업): 매월**

□ **2016년 돌봄서비스 관련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16.10월**

별첨 1

2016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 현황

(2016.1월 기준)

연번	자치구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계	25개 기관		
1	종 로 구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길 17-8	742-9508
2	중 구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중구 다산로6길11	2234-3515
3	용 산 구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11길 16	794-6100
4	성 동 구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 77	2298-5117
5	광 진 구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광진구 군자로 88	466-6242
6	동대문구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동대문 제기로33길 25	963-0565
7	중 랑 구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중랑구 겸재로9길45	070-4341-5810
8	성 북 구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15길 10	929-7950
9	강 북 구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92길 40	999-9179
10	도 봉 구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19-12	993-9900
11	노 원 구	노원구어르신돌봄지원센터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383, 2층8호 (중계동,삼창프라자)	935-5000
12	은 평 구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13길 29-7, 3층	389-9714
13	서대문구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57	070-4800-6922
14	마 포 구	마포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187	325-3852
15	양 천 구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3길 106	2699-2295
16	강 서 구	서울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강서구 화곡로 61길 85	3664-0322
17	구 로 구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72	865-9579
18	금 천 구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51길93-32	804-4058
19	영등포구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영등포구도림로482번지	2068-5326
20	동 작 구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11길 7	823-0064
21	관 악 구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로 35	888-6137
22	서 초 구	서초구어르신행복e음센터	서울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159-6 구립경로당 2F	6925-6990
23	강 남 구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서울시강남구봉은사로24길70	3423-5923
24	송 파 구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2길 41	2203-9400
25	강 동 구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71길 32-5	442-1026

별첨 1

서울시 제3차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시범사업 신청현황

연번	자치구	신청기관	비고
	계	12개구 13개 기관	
1	종로구	-	
2	중구	-	
3	용산구	-	
4	성동구	-	
5	광진구	-	
6	동대문구	-	
7	중랑구	-	
8	성북구	서울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1차,2차 사업 수행기관
9	강북구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1, 2차 사업 수행기관
10	도봉구	도봉노인종합복지관	1차,2차 사업 수행기관
11	노원구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신규 신청
12	은평구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2차 사업 수행기관
13	서대문구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2차 사업 수행기관
14	마포구		
15	양천구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차 사업 수행기관
		목동종합사회복지관	2차 사업 수행기관
16	강서구	-	
17	구로구	구로노인종합복지관	
18	금천구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1차,2차 사업 수행기관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2차 사업 수행기관
19	영등포구	-	
20	동작구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1차,2차 사업 수행기관
21	관악구	관악노인종합복지관	2차 사업 수행기관
22	서초구		
23	강남구	-	
24	송파구	-	
25	강동구	-	